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
------	----

제출일자 : 1998. 9. 4.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875호 '98. 8. 31)에 따라
-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시대 감각과 역할에 맞게 농업기술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 사무소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며
-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명칭변경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 위치변경 : 거창읍 송정리 332-3 ⇒ 거창읍 대평리 1359-19
- 관련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함 : 2개조례
 -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 개정근거

-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875호 '98. 8. 3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1조중 “제11조 제4항”을 “제11조”로 하고, “거창군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하고, “송정리 332-3번지”를 “대평리 1359-19번지”로 한다.

제3조중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중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5조중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 개정) ①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4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제4조 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거창군 <u>농촌지도소</u>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거창군 <u>농업기술센터</u>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거창군 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라 한다)</u>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u>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위치) <u>지도소</u>는 거창군 거창읍 <u>송정리 332-3번지</u>에 둔다.</p>	<p>제2조 (위치) <u>농업기술센터</u>는 거창군 거창읍 <u>대평리 1359-19번지</u>에 둔다.</p>
<p>제3조 (업무) <u>지도소</u>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9 (생략)</p>	<p>제3조 (업무) <u>농업기술센터</u>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9 (현행과 같음)</p>
<p>제4조 (소장) <u>지도소</u>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소장) <u>농업기술센터</u>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조 (하부조직) <u>지도소</u>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 (하부조직) <u>농업기술센터</u>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부칙)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2조 (설치) 농기계순회 수리반은 거창군 <u>농촌지도소</u>에 두고 운영한다. 제4조 (관리책임) <u>농촌지도소장</u>이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2조 (설치) 농기계순회 수리반은 거창군 <u>농업기술센터</u>에 두고 운영한다. 제4조 (관리책임) <u>농업기술센터소장</u>이 농 기계순회수리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u>농촌지도소</u>에 농업,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 개발센터로 갖추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으로 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u>농촌지도소</u>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4조 (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u>농촌지도소장</u>이 운영한다 제5조 (교육훈련) ② 교육과정 및 기간 방법 등은 <u>농촌지도소장</u>이 정한다.</p>	<p>(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u>농업기술센터</u>에 농업,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갖추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으로 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u>농업기술센터</u>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4조 (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u>농업기술센터소장</u>이 운영한다 제5조 (교육훈련) ② 교육과정 및 기간 방법 등은 <u>농업기술센터소장</u>이 정한다.</p>